충/남/리/포/트 CHUNGNAM REPORT 충남리포트 제48호(2011-01: 2011.01.13) 이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 (www.cd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사군의 대유방안

한 상 욱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hansw@cdi.re.kr)

다 모

< 요약 >

- I. 시작하며
- II. 현행 경관법의 주요 특성 및 문제점
- Ⅲ. 개정 경관법(안)의 주요내용
- IV. 충청남도의 대응방향
- V. 결론: 정책제언



≪요 약≫

경관과 관련된 법은 학계에서 진행되던 경관에 대한 논의가 2001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2007년에 「경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동안현행 경관법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위하여 경관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 경관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 경관에 대한 통합관리,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 경관관리대상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 우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위상 제고
- 인구 1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경관계획 내용 차별화
- 기초지자체의 자율성 확보측면에서 광역지자체의 승인절차를 삭제하여 수 립절차 간소화
- 경관기본계획의 실현성 강화를 위한 경관실행계획(정책적 지원, 재정 지원)을 수립·지원
-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 명시. 절차는 국계법의 제24조부터 제33조 에 따름
- 경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경관위원회 기능의 다양화및 강화

이러한 경관법 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경관을 둘러싼 관련 정책의 흐름이 경관 또는 관련 디자인의 질적인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공간환 경에 대한 장소단위의 질적 향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며, 경관 및 디자인 의 질적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관법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군의 대응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경관조례의 개정

- 충청남도의 경관조례를 개정 경관법에 의거하여 보완하여야 함
- 충청남도의 경관계획을 조속히 시행하되, 그 성격은 전략적 성격과 시· 군의 경관계획에 대한 지침적 성격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경관·디자인 관리체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장소기반형 공간관리 체제)
 - 개정 경관법과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통합 시행 유도
 - 개정 경관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에 대응한 별도 재원 마련
 - 경관사업 집행을 위한 추진 조직의 재편
- 경관위원회 및 전문가의 위상 제고
 - 경관위원회의 기능 다양화 및 역할 제고
 - 민간 전문가 제도의 정착·확대 및 건축기본법과의 병행 추진

I. 시작하며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2007년도에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도 디자인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관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경관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건축기본법」이 2007년에 제정되어 국토공간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이라는 데에 있어 법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관관련 개별법의 제정과 중앙부처별 각종 개별사업의 추진에 따라 공간적 경관관리 및 시설물별 경관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공간에 대한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총체적인 디자인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 사업간 연계성 및 정합성이 결여되고, 관련법의 취 지와 운용 목적,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의 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국계법, 경관법, 건축기본법의 역할정립 및 연계 운영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현재 경관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개정의 골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맞추어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안코자 한다.

Ⅱ. 현행 경관법의 주요 특성 및 문제점

1. 경관법의 특성

현 경관법의 특성은 크게 규제보다는 지원위주의 법과 지역특성을 살린 유연 성을 확보하였다는 특징으로 구분된다.

■ 경관법은 기본적으로 규제보다는 지원방안 마련에 그 초점을 맞춤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제 수단은 국계법 등 기존 법에서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 하며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경관법은 경관보전과 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관법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조례 제정에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산발적이고 일관성 없는 지자체의 경관 계획 및 실행에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 경관활동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1)

■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법은 획일적이고 요식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강요하는 굴레가 아닌,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을 발휘 해야 한다. 경관계획은 그 계획범위가 일정하지 않고 계획수립의 대상과 목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¹⁾ 이인성 (2006), 경관관련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경관법의 제정 방향, 「도시문제」 41권 454호,pp24-35

대도시와 중소도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각기 다른 경관관리의 필요성과 조건을 가지고 있고,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농 통합지역, 국립공원 등 경관계획의 대상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를 포괄하는 경관기본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계획이 없어도 도시 내 특정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경관계획만을 수립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다.

2. 경관법 체계상 문제점

경관법으로 경관관리 및 형성과 관련된 사항의 법적 근거는 확보되었으나 경관법은 실천적인 법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기본법으로써 독자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경관법 제정의 취지와 목표에 맞는 경관관리를 도모하는 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경관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법의 구조 및 체계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현행 경관법 구성의 문제점

조항	조문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의	·경관의 정의 ·건축물에 대한 정의(제2조)	·건축물에 대한 정의만 언급 ·경관법에 적용하여 사용할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
경관 관리 기본 원칙	· 경관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 사·문화·생활·경제활동과 긴밀 하며, 지역주민의 협의하여 양호한 경관유지·관리 ·개발행위는 경관 조화·균형 ·경관의 개선·복원·창조 ·자율적 경관행정 운영,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향류(제3조)	· 경관관리, 형성, 복원, 개선, 창조 원칙만 언급 · 양호한 경관유지를 위한 적정한 제한에 관한 기본 이념 포함 필요 ·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 경제활성화 등 포괄 적인 기본원칙에 포함 필요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형성 시책강구 및 국민의 이해 노력(제4조)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 책에 적극 협력(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만 언급 ·양호한 경관형성에는 여러 주체가 필요, 전문 가, 사업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책무를 구체 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타 법률 과의 관계	·경관관련 법률과 상호 유기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규정(당해 법률 우 선 적용)(제5조)	· 경관관련 법률 우선 적용 · 법적의 혼선과 법 간의 상충이 내재 · 타 법률 적용 필요시 관련 규정 및 특례규정을 두어 의제 등의 규정 마련 필요
경관 계획 대상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제6조 제 2호)	·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언급하고 있어 대 상지 선정 혼란 예상 ·계획대상 선정 기준설정과 기본방향 제시 필요
경관 계획 수립의 제안	· 주민(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제도 ·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조)	 계획제안자를 주민(이해관계자) 모두 포함, 무절제한 제안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주민간의 갈등 유발로 실효성 미흡 제안자를 토지 및 건물 등 당해 소유자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인정된 NPO등 시민단체의 한정적 제안 허용 필요
계획 내용	 ・계획 포함내용(제8조) - 경관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 - 경관형성 전망 및 대책 수립 - 국계법상의 미관・경관자구 관리 및 운용 -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 경관계획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 - 기타 경관보전・형성(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관계획수립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함) - 계획의 위계, 국계법의 도시기본 계획내용 부합 	· 경관계획의 실천방향만 제시, 실행수단(규제등)에 대한 내용 미흡 ·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경관·미관지정에 관한 규정 미흡 · 타 법률에서 수립한 계획과의 연계 규정 미흡 · 타 법률에 정한 경관관련 기준·방침 등에 대한 적용 규정 미흡 · 계획 실현을 위한 행위제한 등의 규제와 경관관련 상·하위계획과 타 법률에 의해 수립된 경관관련계획내용, 기본 방침에 대한 조치 규정 필요(예, 자연환경보전계획,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의기준 등)
기초 조사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에 관한 규정(제9조) - 조사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함) - 행정기관 전문기관 조사자료 활용	· 행정기관, 전문기관 조사자료 활용에 대한 규정은 언급하고 있으나 자료 활용 방법(자료의활용 한계 및 사용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없어 실효성이 낮음 · 자료 사용의 한계를 구체화하고 자료 소장처의자료 공개, 제공의 이무화 규정 도입 필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련 자료DB구축 의무화 필요
경관 계획의 승인 등	·경관계획의 승인(제11조)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가 결정	·계획승인을 도지사가 결정토록 규정 ·당해 특성을 잘 알고, 해당 주민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필요
경관 미관 지구 관리	・경관・미관지구의 관리(제12조) -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	· 경관·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 관리 범위 모호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경관·미관지구 관리와의 관례 모호로 상충시 해결 곤란 ·국계법(조례)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 상충방 지,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규정외의 필요한 사 항에 대해 추가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구 체적으로 명기 필요
경관 대상 사업	·경관사업의 대상(제13조 제1항) -가로환경정비 및 개선사업 -이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역 역사·문화적 특성을 실리는 사업	·경관사업의 대상 한정(가로, 지역녹화, 역사· 문화, 농산어촌·자연, 생활환경 개선 등) 등 경관사업 선정기준 미흡 ·경관사업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다양한 지역에

	-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 그밖에 경관보전·관리·형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사업 · 경관시업시행 승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 시·도 지사, 시장·군수 승인(제13조 제2항) ·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서 이루어짐으로 지역 특성 및 요소 등 필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유형별 또는 요소별 등의 대상지 선정 기본원칙 및 경관심 의위원회의 심의기준 강화
추진 협의체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제14조) -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구성, 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단계적 참여 - 조직·운영 및 업무(지방자치단체 조례)	 협의체를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로 한정 구성하여 실효성 미흡 경관의 중요 요소인 공공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전기, 통신, 가스, 도로 관리청 등)확대, 유기적인 경관관리 필요
재정 지원 및 감독	·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제15조) - 경관사업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융자지원, 경관사 업자의 감독	· 금융 등의 지원규정은 있으나 지원범위 및 방법 없음 ·지원범위 및 방법 제시, 지원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의무 규정 필요
협정 체결	 ㆍ경관협정의 체결(제16조) - 협정 체결자 토지소유자 등 전원합의 - 효력: 협정체결 토지소유자 - 경관협정 체결 준수사항: 기준에 의함 ㆍ경관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 의장ㆍ색채ㆍ옥외광고물, 공작물 및 건축설비 위치, 건축물ㆍ공작물의 외부공간 - 토지의 보전 및 이용, 역사ㆍ문화경관의 관리ㆍ조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ㆍ 협정서 명시사항 - 경관협정 명칭, 대상지역의 위치및 범위, 협정의 목적, 협정내용, 협정 체결자, 운영회 명칭 및 주소, 경관협정 유효기간, 경관협정 위반시 제재사항 -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협정 체결자를 토지 소유자로 한정하므로 공익 법인 등 협정체결 불가 · 경관협정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중 농·산·어 촌 경관에 대한 규정이 미흡 · 경관협정 체결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조 치 사항 미흡 · 경관협정 체결자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미흡 · 경관협정 체결 대상자를 공익법인(토지, 주택 공사, 도로공사, 지방단체 등의 투자법인) 등 확대 필요 · 경관협정대상범위도 농·산·어촌 경관요소 포 함 필요 ·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관한 강제 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 정 필요
경 형 영 의 회 설립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제17조) - 주민상호간에 운영회를 설립, 자율 적 경관협정을 운영 관리 - 운영회 구성 조건과 신고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제도가 없음 ·행정 및 전문가 지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 지원제도 필요
경관 협정의 인가	· 경관협정의 인가(제18조) - 특별·광역·도지사·시장·군수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 - 협정인가 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비에 따라 공고, 열람	 경관위원회 작성기준 및 방법, 경관위원회 심의기준이 없음 경관협정 인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인가 절차, 경관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규정 정의 필요

3. 경관관리 대상의 문제점

경관계획 수립시 경관관리 대상은 지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계획수립 지침상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대상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경관 등 경관설계지침이라는 항목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경관계획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을 관리하는데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경관관리 대상이 규모별, 공간적위계별, 계획 요소별로 상이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관리시 그 제도적 방안이 경관위원회를 통한 심의·자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80%)에 의해 경관 형성

대부분의 경관조례에 의해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관심의의 대상은 실질적으로 지자체 전체 허가건축물의 20%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지역의 경관을 형성하는 것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 80%의 소규모 건축물이며,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 없이는 지역경관에 대한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경관관리의 관여가 제한적임

지자체의 경관관리 대상 중 개발사업법에 의한 각종 사업은 실질적인 경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 재개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유연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중·소규모의 주택사업 등은 경관계획과 관련되어 의제처리되어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것을 지자체 입장에서 바꾸어 정리하면, 사업의 시행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중앙, 광역지자체, 외부공공기관, 민간시행사업의 경우,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개별사업의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느냐, 안 갖느냐의 여부에 따라 경관관리 관여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까지는 경관관리의 질적인 성숙을 고려한 디자인적 측면이 아닌, 서면에 의한 행정적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점도 경관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경관사업 추진상 문제점

■ 경관사업 시행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재정지원 수단이 없음

경관법상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만 시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중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거나 수립중인 지자체가 약 30%를 하회하는 상황이고, 충청남도는 천안, 보령, 아산, 당진만이 경관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중에 있다. 경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경관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보조를 받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다.

■ 현실성 없는 경관협정 및 지원

경관협정은 주민의 자발적인 경관형성 및 운영에 참여한다는 취지하에 체결 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토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경관협정은 대도시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관협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경관협정이 이루 어진 곳은 아직 없다.

5. 경관심의의 문제점

경관법에 의거한 경관위원회의 설치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관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경관조례를 설치한 곳은 30%이며,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20%, 실질적인 심의·운영 지침을 제시하는 곳은 매우 희소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경관위원회에 참여하는 경관관련 전문가의 부족, 경관심의 기준 부재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설령 경관위원회의 양적 충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성숙된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를 감안하여, 경관법에서는 타 법률에 의한 위원회(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공디자인 위원회 등)와 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서와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경관위원회의 역할은 담보할 수 없다.

Ⅲ. 개정 경관법(안)의 주요 내용

1. 실행력 확보를 위한 법적 위상 제고

■ 원론적 규정에서 구체적 규정으로의 전환

경관법 개정의 주요 체제는 기존의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에서 총칙, 경관기본계획, 경관실행계획, 경관지구·경관사업·경관협정, 사전경관협의 및 경관협의. 경관위원회로 총5장에서 6장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향은 앞에서 언급한 현.경관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행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두드러진 내용이 경관실행계획, 경관지구·경관사업·경관협정, 사전경관협의 및 경관협의 등의 강화이며, 현.경관법이 임의로 원론적 규정만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강제규정으로 방향을 수정할 예정이다.

■ 타 법률과의 관계상 보완적 성격에서 우선적 성격으로의 위상 강화

현행 법률의 경관계획은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하여 타법의 규정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경관계획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관계획의 위상을 타법의 보완적 성격에서 타법에 우선하는 성격으로 수정 예정이다.

2. 계획수립 절차 간소화·내용 구체화 및 실행계획의 강화

■ 인구 10만이상 지자체의 계획 수립 의무화 및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계획내용 차별화

현행 법률에서는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 반면, 개정 법률에서는 인구 10만이상의 기초지자체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광역지자체와 인구 10만 미만의 기초지자체는 권장사항으로 변동이 없다.

공간단위별 경관기본계획의 성격에도 그 위계에 적합하도록 차별성을 두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경관계획은 기초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의 성격을 가지며, 정책 및 전략계획의 역할을 계획토록 하였고,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은 장 소단위 경관의 보존·관리·형성에 초점을 맞춘 실효성있는 계획에 중점을 두었다.

■ 경관기본계획의 승인절차 간소화 및 자율성 확보

현행 경관법에서는 기초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 수립시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절차의 복잡성을 극복하고 기초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광역지자체의 승인절차를 삭제하여 수립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단, 기초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 수립시 광역지자체의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합성을 유지토록 하였다.(제10조)

■ 경관기본계획의 실현성 강화를 위한 경관실행계획의 수립

정책과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관련법과의 연계성과 추진조직의 활성화, 재정적 지원인 바, 경관실행계획은 경관기본계획에서 선정한 중점관리구역(경관지구,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 한 정책적 지원방안과 예산확보가 주요 골자다.

12

지자체에서는 경관계획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장소단위의 다양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개별법 또는 사업법에 의거하여 추진하던 것을 경관실행계획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통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구분되는 바, 광역지자체는 실행수단의 확보방안, 연도별 계획, 보조 및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기초지자체는 실행수단 확보방안, 연도별 계획, 예산확보방안과 더불어 경관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등으로 역할이 구분될 것이다.

또한, 경관실행계획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경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는 그 활용에 있어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계획의 수립 및 평가, 경관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경관사업의 지원 및 보조,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지원, 경관위원회의 운용으로 규정할예정이다.

■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명시

현행 경관법은 경관지구지정에 관한 권한이 없는 반면, 개정 법률에서는 경관지구의 지정을 경관기본계획에서 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해야할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그 절차는 국계법의 제24조부터 제33조에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그 내용도 경관지구의 관리를 위해 국계법에 의거하여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 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에 있어, 경관기본계획에서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3. 경관시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경관위원회의 기능 강화

▋ 경관사업의 대상 확대 및 지원 근거 마련

현행 경관사업은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사실상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명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를 유도 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제32조)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도 전원 합의에서 2/3이상 참여 시 발의, 4/5이상 참여시 인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경관협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제 34조, 35조, 36조, 38조)

■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협의 등의 기능 다양화

현행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역할만을 소극적으로 수 행하고 있으나. 이를 중앙경관위원회와 지자체경관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로 세분하여 수행토록 개정중이다.

즉, 중앙경관위원회는 국토경관관리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지자체 경관위원 회는 지역차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토록 고려중이다.

경관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심의, 자문, 협의의 기능으로 세분화되지만, 이중 주목해야할 사항이 개발사업 등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사전 경관 '협의' 및 경관 '협의'의 도입이다.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경관협의, 실시계획단계에서는 경관협의를 실시한다는 것인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지 않는 사업, 중앙정부 발주사업, 광역지자체 발주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 또는 디자인적인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경관적 해석에 중점을 두던 풍토에서 협의과정상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관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충청남도의 대응 방향

1. 경관조례의 개정

■ 경관관리업무의 기본방향

개정 경관법에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체제로 강화됨에 따른 경관실행계획, 경관지구·경관사업·경관협정, 사전경관협의 및 경관협의, 경관위원회의 조항에 있어서 다양화 및 구체화가 요구된다.

우선, 충청남도 및 시·군은 현재의 경관담당 업무를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계획의 패러다임이 통합적 계획 및 업무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관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관조례 제정과 경관계획, 경관위원회 운영에 한정하지 말고 경관정책 및제도개선에 관련된 업무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관계획은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업무를 세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기획, 정책홍보의 본연의 업무 외에 도시, 건축, 디자인 등 경관관련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 경관의 질적 개선도 담보할 수 있다.

셋째, 경관부서(계)는 경관의 속성상 다분야에 걸쳐서 통합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하는 바, 부서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경관사업은 단일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며, 건축물, 기반시설, 공원 및 녹지, 농산어촌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개별 부서간의 의견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경관계획의 성격 명확화

현 충청남도의 경관조례는 그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기본방향을 총론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관계획과 관련해서는 향후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경관계획과 관련된 지침적 성격에 대한 내용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 성이 있다.

<충청남도 경관조례 중 경관계획에 관한 내용>

제3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2. 색채 및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 3. 수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4. 가로경관 관리에 관한사항
- 5.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즉, 충청남도의 경관계획은 충청남도 경관관리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시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적 성격을 갖으며, 시군의 경관계획은 지역 여 건에 맞는 상세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표 2> 충청남도 경관조례의 보완 방향

구분	조례	시행규칙	보완방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 기본방향 추가
_	제2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3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4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도 경관계획의 내용 수정
경관 사업	제5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6조 경관사업 계획서 제7조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협의체의 기능 제9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0조 경관시범지역의 지정	제3조(경관사업의 대상)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6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7조(보조결정의 취소) 제8조(경관시범지역의 지정) 제9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항 추가 경관계획이 타당성 여부 검토 조항 추가 경관관련지구의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조항 추가 경관사업 사후평가에 관한 조항 추가 부서별 협조에 관한 조항 추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추가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조항 추가
경관 위원 회	제11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경관위원장의 직무 제13조 경관위원의 해촉 제14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15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10조(현지조사) 제11조(회의록) 제12조(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구체화
	제16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7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18조 공공위원회의 운영 제19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20조 수당 등		• 경관분과위원회 설치 및 경관위원회의 기능 위임조항 추가
기타	제21조 시행규칙		

2. 경관·디자인 관리체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

개정 경관법은 지자체의 공간관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장소기반형의 경관관리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관리의 추세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디자인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디자인 품격 향상이 최종 목적이다.

지자체가 경관 및 디자인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계는 지자체가 책정한 디자인정책의 의미와 역할이 명확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즉 지자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적 측면의 정책 방향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정량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한 법정계획 그 자체가 아니라,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공간을 디자인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지역단위에서 수립하는 종합적인 공간관리방안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간조성과 관련한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장소단위의 공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통일된 경관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각 관련법 간의 상호연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보해야 한다.

개정 경관법에서도 경관관리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경관협의 및 경관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것은 본질적인 지자체의 디자인정책에 있어 서 결과물에 대한 협의 및 심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지역의 도시디자인 정책 경관법 경관부문계획에 부합 도시기본계획 마스터플랜 기본경관계획 경관 전략제시 도시기본계획과 부문 정합성 유지 계획 보전 형성 및 개발 관리 도시관리계획 공간특성별 관리방안 특정경관계획 . 특정지역의 상세 실현수단제시 경관계획 필요 규제가 필요한 경우 도시 지구 용도지역 계획 단위 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조례 계획 시설 중첩 도시개발사업 경관지구 미관지구 경관사업계획 경관협정체결 지원조례 경관상세계획 정비사업 연계 운영 택지개발사업 주택사업 규제가 필요한 경우

<그림 1> 관련법의 병행적용에 의한 도시디자인정책 수립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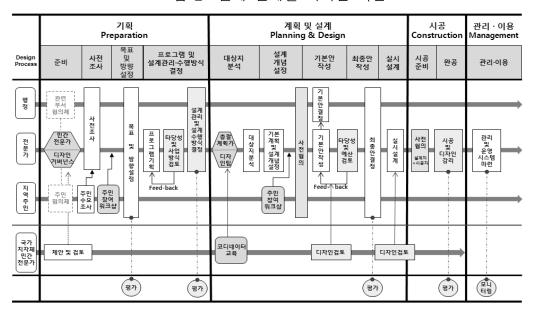
즉, 건축물과 공간환경디자인의 최고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기획-설계-시공-사용과 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행동규범을 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건축행위에 관한 규제나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낼수 있는 디자인프로세스에 대한 체계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 경관법과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이 융합되어야 하며, 건축디자인 기준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구현을 위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principle)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디자인기준은 가장 보편적으로 직면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디자인의 문제에 대응하여 디자인 행위에 따른 부적합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개발행위 및 계획수립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경관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 3D 시뮬레이션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할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거나, 신도시조성사업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및 공간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디자인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경관법은 사업추진주체별 경관 심의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아래 <표 3>과 같은 절차 이행시 경관협의와 건축디자인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사업유형별 심의·협의 적용방향

구분		단위사업	지역사업
기초지자체 직할사업		•기초지자체 직접 발주사업 → 경관·건축디자인 전면 적용	•기초지자체 직접시행하는 주거환 경개선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 경관·건축디자인 전면 적용
중앙 광역 목 및 외부	기초지자체 허가승인권 보유		• 중앙·지방공사 시행 주거환경개 선사업 - 경관·건축디자인 전면 시행 곤란 → 사업초기부터 디자인내용 검토· 협의·조정이 가능한 절차기준 정립
		• 중앙정부 각부처 및 교육청 사업 - 경관·건축디자인 전면 시행 곤란 → 협의 의견제시 과정에서 디자인 내용 검토·협의·조정 절차 기 준 정립	•중앙·광역정부가 승인권을 갖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 경관·건축디자인 전면 시행 곤란 → 협의 의견제시 과정에서 디자인 내용 검토·협의·조정 절차 기 준 정립
민간시행사업		•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 경관·건축디자인 전면 시행 곤란 허가권을 활용하여 사전에 디자 인 내용 검토·협의·조정 가능 → 사업초기부터 검토·협의·조정 가능 절차 기준 확립	



<그림 2> 전체 단계별 디자인 기준

3. 경관위원회 및 전문가의 위상 제고

■ 경관위원회의 기능 다양화 및 역할 제고

경관위원회는 경관을 비롯한 도시, 건축,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등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되고, 그 형태도 경관심의·자문·협의로 그 역할이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볼 때. 경관위원회는 우선 명문화된 지침 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사항은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지 적과 요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지침」과 특별한 경관관리가 요구 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특별지침」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표 4> 경관위원회의 개발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규모 기준별 요건(안)

	시ㆍ도 경관위원회	시・군・구 경관위원회		
구분	(시행령 제 27-29조)	(시행령 제30-32조)		
		그 최소기준 최대기준		
개발		구분 기고기군 기대기군 (m²) (m²)		
	• 면적 30만㎡이상 1㎞미만,	주거,상업,잔연 지역,생산녹지 1만 지역		
사업	• 부피 50만㎜이상 100만㎜미만	' 공업지역 3만 30마		
(협의)		보전녹지지역 5천		
		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시한원당보다시크 J전		
사회 기반 시설 (심의)	1. 법2조11항의 중점경관관리 사회기반시설 중 다음규모이상의 사업 가. 지자체 도는 지자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건서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시・도 경관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물	│ ●시·군·구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 대성 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경관법 시행령 Ⅰ 제3조(중점경관관리 사회기반시설의 종 리 류) 중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건축물 (심의)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 적 3만㎡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경관지구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공공건축물 	•시·군·구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 대상물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으며, 경관관 리를 위한 디자인적 측면의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의 심의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표 5>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분	주요 심의 사항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재정비 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역사문화	관광지조성계획
미관개선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자연경관	공원계획, 자연경관영향심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농촌경관	경관보전협약사업
기타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세분, 경관관련 지역 및 지구의 지정

<표 6> 경관위원회의 디자인 관련 심의기준 방향(안)

2	오소	대상	방향
배	도시 구조	-건물과 건물, 길과 공간의 체계 -건물과 길, 외부공간의 연계 체계	-개발형태와 용도 결정
치	도시 조직	- 가로 블록과 획지, 건물 배치 방식	- 블록패턴과 획지 구획이 도시조직 결정
3	풍경	-형태, 자연환경, 색,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진 토지의 형세	- 외부공간, 식재, 경계 등
토지	도와 이이용 ^혼 합	- 개발된 양과 용도의 종류 - 밀도는 개발 강도에 토지이용 혼합은 활기찬 장소를 만드는데 영향	- 상업용도 : 용적률 - 주거용도 : 주택수, 방의 개수
스케	높이	- 주변 환경, 특히 사람 대비 건물크기 - 건물의 높이	- 층수, 절대높이, 가로폭에 대한 건물의 높이비
일	매싱	-건물의 배치와 체적, 형태, 건물군의 모습	-3차원적인 개발의 양
외	디테일	-건물의 장식, 스타일, 조명, 건축술	- 출입구와 개구부, 베이, 열주, 발코니, 지붕, 입면의 리듬감
관	재로	-재로의 질감과 색깔, 패턴, 내구성, 사용방식	-재로사용에 따라 건물의 품격, 매력 결정

■ 민간전문가 제도의 정착 및 확대

개정 경관법에서는 외부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간전문가의 참여는 먼저 단순히 용역관계나 단순한 자문관계가 아닌 행정주체와 수평적 관계의 조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정립되어야한다. 이러한 경관법에서의 동향은 건축기본법(제23조)2)과 같은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경관조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경관관련 전문가의 유형이나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민간 전문 가의 보수나 운영지침 등에 대해 제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규정에 근 거한 민간전문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상시적인 업 무협조가 아니더라도 경관위원회의 위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 야 한다.

²⁾ 건축기본법 제2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V. 결론: 정책제안

개정 경관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국토 경관에 대한 통합관리, 경관관 리의 실행력 확보, 경관관리대상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국토경관의 통합관리는 국가의 책무 명시, 사회기반시설 및 개발사업 등에 대 한 경관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관관리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관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및 대상 확대, 경관실행계획 수립, 경관특별회계 설치, 경 관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경관관리대상의 확대에 있어서는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을 경관관리 대상으로 포함하 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이 추진중이다.

이러한 경관법(안)의 흐름에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경관 또는 디자인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경관은 물론 관련 정책을 부분적으로 융합하면서 경관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

현행 경관법의 조항이 임의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의 수정, 그 실행력을 담 보하기 위한 경관법의 위상 강화, 경관특별회계 설치 등은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정 경관법(안)이 모든 경관요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공청회 결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아 직 우리나라는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실체도 명확하게 정립된 바가 없으며, 실효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경관협정, 경관지구, 경관사업에 대한 어떠한 성공모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은 개정 경관법(안)의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경향 외에 건축기본법에 의한 지자체의 건축디자인 설정·적용은 계획의 결과에 대한 심의가 아닌 디자인과정과 실천전략을 포함하는 도시디자인 정책적 접근을 취하는 점을 개정 경관법(안)에서 일부 차용하는 것은 경관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로 남는다.

둘째, 경관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문가의 역할이 강화되어 야 한다.

지금까지의 법률은 법제정에 따른 관련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시범사업 추진이 일반적인 행태였지만, 경관이나 건축디자인,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장소기반형의 디자인 추진은 기존 조직 및 업무의 통합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중앙에서는 개별부처별 경관관련 정책, 사업, 시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부처의 정책, 사업, 시책이 한 부서로 통합되는 것이 현실인 바, 지역의현실을 숙지하고 있는 경관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경관위원회가 그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경관위원회 전문가 중 5% 미만이 경관전공이며, 대부분의경관전문가가 수도권 거주자인 점은 지방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셋째, 경관의 보전·형성·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경관의 질적인 향상인 바, 현재의 경관관련법은 대부분 법적 규제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로 인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문제시 되는 경관의 대부분이 소규모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경관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체계화한다 하더라도, 공간환경을 질을 결정하는 것은 제도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점에 있어서 향후,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디자인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 참 고 자 료 ◆

- ∘ 강부성외(2010), 영주시 건축디자인기준 설정연구, 영주시
- ∘ 국토해양부(2010), 경관법 개정에 관한 공개 토론회.
- 서수정외(2008), 살고싶은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경관·건축디자인 설정방안 연구, 국 토해양부
- ∘서수정외(2010), 2009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및 개선연구, 국토 해양부
- ∘ 이성룡외(2008), 경기도 경관관리 체계 구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 이인성 (2006), 경관관련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경관법의 제정 방향, 「도시문제」41 권 454호.
- ∘ 한상욱외(2009),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한상욱외(2010),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제도 도입과제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 건축기본법[법률 제8852호, 2008.2.29]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7호, 2010.7.12]
- · 경관법 [법률 제8974호, 2008.3.21]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1847호, 2009.11.26]
- ∘ 충청남도 경관조례[제3460호,2009.12.30] 및 시행규칙[제 3103호,2010.08.10]

안 상 욱, hansw@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Tel. 041-840-1143

충남리포트 리스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제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품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 02	41000N7 FCM 4172604 TOMOCT	001 000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